

고

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9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0 시설사업(00공장 등) 5건
-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해군 000 시설사업 (00공장 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41, 29-42, 29-43, 공유수면 매립지	182,288	182,288
해군 000 시설사업 (승조원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3	1,895	1,895
해군 000 시설사업 (방파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공유수면 매립지	4,916	4,916
해군 000 시설사업 (상가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공유수면	10,058	10,058
해군 000 시설사업 (충전부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공유수면 매립지	2,058	2,0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54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